

예 산 총 칙

201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75,491,792	11,264,754
일반회계	344,331,306	10,329,939
특별회계	31,160,486	934,815
기타특별회계	31,160,486	934,815
상수도사업	1,850,214	55,506
하수도사업	1,772,549	53,176
수질개선	3,827,188	114,816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52,449	13,573
의료급여기금	585,916	17,577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113,060	3,392
소득특화사업	6,122,938	183,688
농공단지조성사업	3,001,747	90,052
공영개발사업	2,546,346	76,390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888,079	326,642

제 2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157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